

	<h2>규율 및 상벌 규정</h2>	문서번호	3-4-3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규율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,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)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징계)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한 자
 2.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써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
 3.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
-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사회봉사명령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 및 퇴학으로 구분하며,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.
-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h2>규율 및 상벌 규정</h2>	문서번호	3-4-3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